

#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839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6.

발 의 자 : 박완주 · 장정숙 · 정인화

윤영일 · 송갑석 · 박지원

신창현 · 백혜련 · 서영교

김현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,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시·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따라서, 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23조 및 제24조의 시·도지사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주요내용

가축의 소유자, 농장경영자,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,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

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함(안 제23조 및 제24조).

##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나 관계 공무원(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, 사무소, 사업장, 그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,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,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, 식품접객업자,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, 사업장,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

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 
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약)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